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429 호

2001 년 12 월 28 일 금 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1-61호 (2002년도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고시)-----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7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 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81호 (2002년도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열람공고)----- 1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82호 (2001년9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 1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84호 (공시송달공고(식품위생법위반에따른처분사전통지)공고)----- 1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1-61호

2002년도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01. 12.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02年度 建物 및 其他物件 時價標準額 決定

1. 건 물 : 내용 별지기재

2. 기타물건 : 내용 별지기재

[세부내용 : 200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예]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인하 대상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차의 시가표준액은 특별소비세 세율 인하시까지는 특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특별소비세 세율의 인하율을 환원한 때에는 특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되지 아니한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다.

1. 2002년도 시행 건물 시가표준액 주요결정 내용

구 분	2001년	2002년
건 물	○ 기준가격 • ㎡당 165,000원 ○ 구조지수 • 철골콘크리트조 : 120 • 시멘트벽돌조 구조지수 : 75 • 경량철골조 구조지수 : 70 • 조립식판넬조 구조지수 : 70 ○ 용도지수 • 숙박시설 • 의식시설·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가감산특례 • 단독주택에 대한 가산율 1구내 연면적이 331㎡ 초과 → 70/100 • 공동주택에 대한 가산율 1구의 전용면적이 245㎡ 초과 → 70/100	○ 기준가격 • ㎡당 165,000원(동결) ○ 구조지수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20 • 시멘트벽돌조 구조지수 80으로 상향조정 • 경량철골조 구조지수 65로 하향조정 • 조립식판넬조 구조지수 65으로 하향조정 ○ 용도지수 조정 및 추가 • 숙박시설 여인숙(전업민박 포함) • 의식시설·근린생활시설 잡예식장, 산후조리원 추가 • 교육연구시설 수련원 추가 ○ 가감산특례 • 단독주택에 대한 가산율 1구내 연면적이 331㎡ 초과 → 60/100으로 조정 • 공동주택에 대한 가산율 1구의 전용면적이 245㎡ 초과 → 60/100으로 조정

2. 2002년도 시행 기타물건 주요결정내용

구 분	2001년	2002년
차 량	○ 종류 : 7,633종 승용, 승합, 고속버스, 화물, 이륜	○ 종류 : 9,047종(1,414종 증가) • 신규 1,952종, 삭제 538종 ○ 승용차량 특소세 인하분 반영(한시 적용) 인하분 반영시 평균 $\Delta 0.33\%$ 인하 인하분 미반영시 평균 0.56% 인상
기 계 장 비	○ 종류 : 6,171종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 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 기, 모우터그레이터, 로올러, 노 상안전기, 콘크리트베틙플랜트, 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살포 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 팔트휘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 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향타 및 향발기, 사리채 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도 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선별 기, 기타건설기계	○ 종류 : 6,324종(153종 증가) • 신규 168종, 삭제 15종 ○ 평균 0.15% 인상 • 인상 : 170종 • 인하 : 56종 ※ 생산업체별 판매가격 반영
선 박	○ 종류 : 135종 강선, 목선, 목철선, 경금속 선, FRP선, 시멘트선, 기타선, 기관	○ 종류 : 135종 ○ 평균 0.583% 인상 조정 • 선박 : 2.077% 인상 • 기관 : 동결 ※ 조정사유 : 타물건에 비하여 현실화율이 낮음 (34% 정도)
항공기	○ 종류 : 107종 고정익, 회전익	○ 종류 : 103종(4종 감소) • 신규 1종 • 삭제 5종 ○ 평균 0.626% 인상 (환율변동폭 등을 고려 소폭인상)
입 목	○ 종류 : 33종 • 산림목 : 17종 • 유실수 : 16종	○ 종류 : 35종(2종 증가) • 신규 2종 ○ 평균 2.0% 인상 (과표 현실화율 감안 소폭인상)

구 분	2001년	2002년
시설물	○ 종류 : 654종	○ 종류 : 695종 (<u>41종 증가</u>) • 신규 41종 ※ 열수송관, 송전철탑,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은 과세대상으로 새로 추가 ○ 평균 <u>△0.01% 인하</u> (시설물중 수조는 현시가 반영 △8.9% 인하, 주유시설 0.06% 인상, 그외 물건 동결)
부 수 시설물	○ 종류 : 211종	○ 종류 : 227종 (<u>16종 증가</u>) • 신규 16종 ○ 동결 (현시가 고려 전년도 수준 동결)
어업권	○ 개별과표를 결정하지 않고 과표결정 방법만을 정하고 있음.	○ <u>2001년과 동일</u> • 조사가격 = 인근 동종어장의 매매 실투가격 - 당해어장어구설치비 - 양식물의 종폐 및 치어대
광업권	○ 개별과표를 결정하지 않고 과표결정 방법만을 정하고 있음.	○ <u>2001년과 동일</u> • 조사가격 = (톤당수입가격 × 매장량 - 기계 및 시설비 + 기계설비 이전비) × 0.5

3. 2002년도 시행 회원권 시가표준액 결정내용

○ 골프회원권

2001년도	2002년도
○ 국제골프장 • 24,000,000원	○ 국제골프장 • 25,000,000원

○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명	소재지	면적 (평)	구좌	시가표준액	비고
동 양 콘도미니엄	인천광역시 용진군 자월면 승봉리	63.11	1	9,803	
		63.86	1	9,916	
		66.35	1	10,306	
		67.17	1	10,429	

4. 2002년도 상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2001하반기	시가표준액결정 (인상율)
소 (500kg)	2,311	<u>2,520</u> (↑9.0%)
돼 지 (100kg)	161	<u>175</u> (↑8.7%)

※ 자세한 결정내용은 인천광역시 세정과, 남동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200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7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453-2686) 및 건설과(☎ 453-25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내 니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12.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09-209번지 부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로(소로2-1호선)
 - (2) 명 칭 : 논현동 성화빌라 LG주유소 부근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폭원(B)=8M, 연장(L)=3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간 : 2001. 12 ~ 200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첨
8. 도시계획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0.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81호

2002년도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열람공고

2002년도 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이 별지 기재내용과 같이 결정되었기에 세부사항에 대한 열람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2.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아 래 -

1. 내 용 : 200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2. 열람기간 : 2002. 1. 1 ~ 2002. 1. 31
3. 영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4. 문 의 : ☎ (032)453-2280~2288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82호

2001년9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 · 공고

2001년도 9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01. 12. 28일 결정됨에 따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2.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2001년도 9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별 첨
- 공 고 기 간 : 2001.12.28 ~ 2002.1.26
- 이 의 신 청 : 2001.12.29 ~ 2002.1.27
- 제 출 처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453-27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게재생략) : 2001년 9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73번지외 491 필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84호

공시송달공고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성명(상호) : 어재순(CNN단란주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240-6

내 용 : 귀하께서는 2001년 7월 12일자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영업자지위 승계신고시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였던 바, 영업허가 개시후 3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2001년 10월 25일까지 위생교육을 않았기 처분에 앞서 의견을 받고자 2001년 10월 29일의 몇차례 업소 방문 및 10월 30일 등기우편발송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어 공시송달하오니, 2002년 1월 12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55조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할 것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1. 12.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453-2455, FAX 032-453-2439 <http://www.namdong.incheon.kr>)

